

부모의 권리

가족을 위한 Early Start 가이드

2025년 개정



출판 정보

부모의 권리: '가족을 위한 Early Start 가이드'는 캘리포니아 발달장애서비스국(이하 '본 국')이 캘리포니아 교육부 및 위탁 업체인 WestEd의 도움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출처를 캘리포니아 발달장애서비스국으로 명시하는 한, 이 안내서의 어떤 부분이든 자유롭게 복사·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문 정보

추가 사본이 필요하시면 Early Start Neighborhood 웹사이트 earlystartneighborhood.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 Early Start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800-515-BABY (800-515-2229),
- 웹사이트 방문: www.dds.ca.gov/services/early-start
- 이메일 문의: earlystart@dds.ca.gov

©2025년 발달장애서비스국

목차

출판 정보.....	1
주문 정보.....	1
참조:.....	3
용어 정의.....	3
섹션1:소개.....	4
섹션 2: 사전 동의.....	5
섹션 3: 기밀 유지 및 기록 열람.....	6
섹션 4: 평가 및 진단.....	7
섹션 5: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	9
섹션 6: 조정 회의, 적법 절차 심리 및 주정부 불만 제기.....	11
섹션 7: 조정 회의.....	12
섹션 8: 적법 절차 심리.....	13
섹션 9: 주정부 불만 제기.....	15
섹션 10: 맺음말.....	17



참조:

문서는 다음의 법률 및 규정 조항들을 참조합니다.

- 34 CFR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34편을 의미합니다.
- GC는 Early Start를 관할하는 주 법률인 정부 법전(Government Code)을 의미합니다.
- CCR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을 의미합니다.

용어 정의

이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일부 명칭은 가독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축약하여 사용합니다.

- 발달장애서비스국(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DDS) — 이 문서에서는 ‘본 국’이라 칭합니다.
- 캘리포니아 교육부 – CDE
- 지역 교육 기관 – LEA
 - 여기에는 지역 학교, 학군, 카운티 교육청이 포함됩니다.
- 특수교육 지역 계획 지구 – SELPA
- Early Start 프로그램 –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센터 및/또는 지역 교육 기관(LEA)

Early Start 프로그램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역 Early Start 프로그램이나 Early Start Baby Line(800-515-2229)으로 전화하시거나 earlystart@dds.ca.gov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섹션1:소개

Early Start는 캘리포니아에서 장애가 있는 영유아(출생부터 3세까지)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이 자녀의 발달을 지원하는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자녀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및 주 법률을 준수합니다. 부모로서 귀하는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별한 권리와 보호를 받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귀하 가족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고, 가족 전체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문서는 이 프로그램 내에서 보장되는 귀하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모”는 여러분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arly Start에서 누가 “부모”로 간주됩니까? [34 CFR 303.27]

1.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 또는 양부모(입양 부모)
2. 위탁 부모
3. 후견인: 법원으로부터 자녀를 돌보고 자녀의 건강, 교육 및 발달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4. 생물학적 부모나 입양 부모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 여기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계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대리 부모: 부모가 부재 시 자녀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지정된 사람입니다. 해당인은 아동의 필요를 이해해야 하며, 어느 한쪽을 편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4 CFR 303.422; 17 CCR Section 52175]

섹션 2: 사전 동의

자녀가 Early Start에서 어떠한 검사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귀하는 반드시 동의하고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도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귀하의 선택이며, 언제든지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라고 합니다. [34 CFR 303.7, 34 CFR 303.420]

귀하의 상황에서 "부모"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자녀의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여 누가 동의 권한을 행사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부모로서 귀하는 사전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Early Start 프로그램이 특정 활동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요청할 때, 해당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3.7]
2.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귀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4 CFR 303.414, 17 CCR 52162(B), 17 CCR 52169]
3.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귀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4 CFR 303.420(a), 17 CCR 52162(a)]
4. 자녀를 위한 Early Start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귀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4 CFR 303.420(a), 17 CCR 52162(a)]
5. Early Start가 서비스 비용 지불을 위해 귀하의 의료 보험을 사용하려 할 때, 이로 인해 혜택이 감소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혜택 또는 메디케이드 웨이버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귀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7 CCR 52162(d)]
6.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7(c)] 이 경우, Early Start 프로그램은 자녀가 받지 못하게 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릴 것입니다. [34 CFR 303.420(b), 17 CCR 52162(c)]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이는 향후 조치에만 적용되며, 이미 제공된 조치나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섹션 3: 기밀 유지 및 기록 열람

Early Start 기록은 자녀에 대한 중요한 정보의 원천입니다. 귀하가 자녀와 가족에 대해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이며 보호됩니다. 자녀를 직접 돕는 관계자만이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자녀와 가족의 정보를 어떻게 비공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4 CFR 303.404]
2. 자녀의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요청할 권리. 또한 다른 사람이 자녀의 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에 포함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4 CFR 303.405, 17 CCR 52168]
3. 요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자녀의 기록 사본이나 요청한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 [17 CCR 52164(b)]
4. 본 프로그램에서 귀하가 요청한 자녀 기록의 수정이나 삭제를 거부할 경우, Early Start 프로그램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권리. [17 CCR 52168(c)]
5. 자녀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Early Start 프로그램은 가족 교육 권리 및 프라이버시법(FERPA)에 따라 개인 기록을 수집, 보관, 공유 및 파기하는 방법에 대해 귀하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34 CFR 303.29, 17 CCR 52160(a), 17 CCR 52162, 17 CCR 52165, 17 CCR 52169]

섹션 4: 평가 및 진단

자녀가 캘리포니아 Early Start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훈련된 전문가 팀이 자녀를 만나 파악하고 현재 발달 상태를 검사합니다. 이 팀에는 언어치료사(SLP), 작업치료사(OT), 물리치료사(PT) 또는 기타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 중 가족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로서,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Early Start 내에서의 모든 권리를 알 권리. [34 CFR 303.421, GC 95020(c), 17 CCR 52161]
2. 자녀가 Early Start 평가를 받도록 요청할 권리. 평가 과정 중에 정보를 공유할 권리. 귀하는 자녀의 Early Start 서비스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동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3.7, 34 CFR 303.420, 17 CCR 52040(d), 17 CCR 52082(b), 17 CCR 52084]
3. 모든 검사가 시행되기 전에 서면으로 동의할 권리. 검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34 CFR 303.420, 17 CCR 52162]
4. 자녀가 Early 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모든 검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321, GC 95020, 17 CCR 52082, 17 CCR 52084]
5. 자녀가 Early Start에 의뢰된 후 45일 이내에 모든 검사 결과의 완전한 서면 사본을 받을 권리. [34 CFR 303.310, 17 CCR 52086(a)]
6. 검사 결과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권리. [GC 95020(b)]
7. 자녀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제공받을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34 CFR 303.343, GC 95014(a), GC 95020(b), 17 CCR 52082(a), 17 CCR 52104]

연방법 및 주법은 또한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가능한 경우, 검사는 가정에서 자녀와 사용하는 언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34 CFR 303.321(a)(6)]
2. 검사 절차와 자료는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34 CFR 303.321(a)(4), 17 CCR 52082(g)]
3. 가능한 경우, 귀하 가족의 필요, 우선순위 및 우려 사항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17 CCR 52084(d)(4)]
4. 검사 자료는 본래 설계된 목적과 방식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7 CCR 52082]
5. 검사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됩니다. [34 CFR 303.321, 17 CCR 52082, 17 CCR 52084]
6. 시각, 청각, 정형외과적 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동의 경우, 이러한 상태를 고려하여 검사를 선택함으로써 아동의 장애가 아닌 능력과 발달 정도를 측정합니다. [17 CCR 52082]

7. 검사는 다음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GC 95014, 17 CCR 52082, 17 CCR 52022]:
 - a. 인지 발달 – 자녀가 생각하고,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b. 신체 발달 – 팔, 다리, 손의 사용을 포함한 신체 활용 능력 및 시각, 청각, 건강 상태.
 - c. 수용 언어 발달 – 자녀가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
 - d. 표현 언어 발달 – 자녀가 자신의 필요와 생각을 타인과 나누는 방식(수어 및 기타 의사소통 방법 포함).
 - e. 적응 발달 – 자녀가 식사나 옷 입기 등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 f. 사회·정서 발달 – 자녀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8. Early Start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의 성장과 발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GC 95014, 17 CCR 52082, 17 CCR 52084]
9. 가능한 경우, 검사는 가정, 어린이집, 공원, 도서관 등 영유아가 평소 시간을 보내며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17 CCR 52082(i), 17 CCR 52084(e)]
10. 자녀의 건강 및 병력에 관한 중요한 기록들이 검토될 것입니다. [34 CFR 303.321, 17 CCR 52082]
11. 추가 검사 없이 기존 기록만으로 자녀의 서비스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4 CFR 303.321]
12. 훈련된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자녀를 검사하고 Early Start 서비스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문가의 소견만으로도 자녀의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321]
13. 자녀의 Early Start 서비스 자격은 단 한 가지 검사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팀이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함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34 CFR 303.321, 17 CCR 52082]
14. 귀하는 자녀의 발달과 가족의 필요에 대한 가족의 자원, 우선순위, 우려 사항 등을 논의하는 면담에 참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321, 17 CCR 52084, 17 CCR 52106]

섹션 5: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와 가족을 위한 조기 개입 서비스 옵션을 설명하는 서면 계획입니다. 자녀가 Early Start에서 처음 검사를 받는 경우, 의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팀은 자녀를 위한 첫 번째 IFSP를 수립합니다. 첫 회의 전에 검사 결과를 미리 받아 검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34 CFR 303.20, 34 CFR 303.342, GC 95020(b), 17 CCR 52100, 17 CCR 52102]

자녀의 IFSP는 최소 6개월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17 CCR 52102] 귀하가 요청하거나 상황이 변할 경우 더 일찍 검토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최신 검사를 통해 자녀의 성장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IFSP를 개정해야 합니다. [34 CFR 303.342] 원격(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Early Start 프로그램은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귀하 및 자녀와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단, 이 대면 요건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GC 95020(c)(2)(A)]

IFSP 회의와 관련하여 부모로서,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귀하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IFSP 회의를 진행할 권리. [34 CFR 303.342, 17 CCR 52102]
2. IFSP 회의 전에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34 CFR 303.342, 17 CCR 52102]
3. IFSP 회의에 참석하고 참여할 권리. [34 CFR 303.343, 17 CCR 52104]
4. 다른 가족 구성원을 IFSP 회의에 초대할 권리. [34 CFR 303.343, 17 CCR 52104]
5. 옹호자나 다른 사람들을 IFSP 회의에 초대하여 함께 참여하게 할 권리. [34 CFR 303.343, 17 CCR 52104]
6.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된 IFSP 전체 사본을 무료로 받을 권리 [34 CFR 303.25]. [34 CFR 303.409, 17 CCR 52102].

IFSP 문서와 관련하여 부모로서,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7. IFSP의 모든 내용을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받을 권리. [34 CFR 303.342, 34 CFR 303.404, 17 CCR 52102]
8. IFSP에 명시된 서비스에 동의할 권리. 특정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미 동의했거나 자녀가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라도,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자녀가 받는 다른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4 CFR 303.342, 34 CFR 303.420, 17 CCR 52102]
9. 자연 환경(가정, 어린이집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 [34 CFR 303.13, 34 CFR 303.344, 17 CCR 52106]

10. 다른 기관과 자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권리. [34 CFR 303.401, 17 CCR 52112, 17 CCR 52169]
11. 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자녀의 Early Start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 [34 CFR 303.421, 17 CCR 52161]
 - a. 통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i. 계획 중인 조치나 변경 사항,
 - ii. 그러한 계획의 이유, 및
 - iii.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절차적 보호장치"라고 함).
 - b. 통지는 귀하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으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401 to 303.421, 17 CCR 52161]

섹션 6: 조정 회의, 적법 절차 심리 및 주정부 불만 제기

Early Start에서는 부모로서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받고 가족의 우려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와 보호를 받습니다. [34 CFR 303.436, 17 CCR 52173, 17 CCR 52174]

Early Start 프로그램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견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권과 특정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음 절차는 만 3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부모로서,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자녀의 Early Start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라도 Early Start 프로그램과 의견이 다를 경우, 언제든지 조정 회의나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권리. [34 CFR 303.430, 34 CFR 303.431, 17 CCR 52172]
2.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정 또는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을 권리. [34 CFR 303.432, 17 CCR 52172]
3. 자녀의 자격 요건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Early Start가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생각될 경우 불만을 제기할 권리. [34 CFR 303.434, 17 CCR 52170]
4. 자녀의 Early Start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조정 회의를 요청할 권리. 불만을 제기하기 전이나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도 조정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431, 17 CCR 52173]
5. 적법 절차 심리의 결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433(c)(3), 17 CCR 52170(b)]

섹션 7: 조정 회의

조정은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이며 비밀이 보장되는 절차로, '조정자'라는 중립적인 제3자가 귀하와 Early Start 프로그램 간의 이견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34 CFR 303.431, 17 CCR 52173]

부모로서,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1. 분쟁 해결의 첫 번째 수단으로, 또는 적법 절차 심리나 불만 처리 과정 중 언제든지 조정을 요청할 권리. [34 CFR 303.431, 17 CCR 52173]
2. 원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권리. [34 CFR 303.431, 17 CCR 52173]
3.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자격을 갖춘 중립적인 조정자를 배정받을 권리. [34 CFR 303.431, 17 CCR 52173(c)]
4. 귀하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조정 회의를 진행할 권리. [34 CFR 303.431, 17 CCR 52173]
5. 회의에 다른 사람이나 옹호자 동반할 권리. [17 CCR 52173(h)]
6. 조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향후 법정이나 심리에서 귀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 [17 CCR 52173(j)]
7. 조정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술한 서면 문서를 받을 권리. [34 CFR 303.431, 17 CCR 52173(i)]

조정 요청서는 다음 기관에 제출합니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Attention: Early Start Intervention Sect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전화: (916) 263-0654

팩스: (916) 376-6318

섹션 8: 적법 절차 심리

이견 해결 및 적법 절차 심리

자녀의 Early Start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IFSP 회의에서 논의하거나 조정 회의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녀의 서비스 코디네이터, 지역 센터 또는 특수교육 지역 계획 지구(SELPA)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CFR 303.430, 17 CCR 52172]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하는 사유

자녀의 Early Start 자격 요건이나 서비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이견이 있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7 CCR 52172(a)]

적법 절차 진행 중 서비스 지속

적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와 Early Start 프로그램이 변경에 합의하지 않는 한, 자녀는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에 명시된 Early Start 서비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는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IFSP 내의 모든 서비스를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단, 자녀가 생후 36개월이 되면 모든 Early Start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그 후에는 자녀가 전환되는 다음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34 CFR 303.209]

적법 절차 심리 요청하기

적법 절차 심리를 시작하려면, 다음 주소의 행정심리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으로 서면 요청서를 보내주시십시오 [17 CCR 52172]: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Attention: Early Start Intervention Section
2349 Gateway Oaks Drive, Suite 200
Sacramento, CA 95833-4231

전화: (916) 263-0654

팩스: (916) 376-6318

적법 절차 심리 요청 양식은 서비스 코디네이터, Early Start 프로그램 또는 발달장애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기

귀하는 Early Start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4 CFR 303.440(a)(2) 적법 절차 심리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 절차 심리는 행정심리국이 귀하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항소하지 않는 한 최종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17 CCR 52172(e)]

섹션 9: 주정부 불만 제기

불만 제기

누구든지 Early Start 기금을 지원받는 지역 센터, 지역 교육 기관(LEA)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서명이 포함된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또는 연방의 Early Start 법률이나 규정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나 서비스 제공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arly Start 관련 불만은 오직 Early Start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17 CCR 52170]

개인정보 보호

본 국은 접수된 모든 불만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본 국은 Early Start 프로그램의 권한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34 CFR 303.432, 17 CCR 52169, 17 CCR 52170(a)]

불만사항 접수 지원

자녀의 서비스 코디네이터, 지역 센터 사무소 또는 특수교육 지역 계획 지구(SELPA)로부터 불만 제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국과 캘리포니아 교육부(CDE) 또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발달장애 위원회(SCDD)나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옹호 센터(Disability Rights California)와 같은 옹호 단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4 CFR 303.437, 17 CCR 52170]

불만 사항 접수처

서명이 포함된 서면 불만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Attention: Community Appeals and Resolutions Branch

1215 O Street, MS 8-20

Sacramento, CA 95814

전화: (916) 651-6309

팩스: (916) 654-3641

이메일: earlystart@dds.ca.gov

불만 제기 시 권리

1. 불만을 제기할 때 서비스 코디네이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7 CCR 52170]
2.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본 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4 CFR 303.433, 17 CCR 52171(a)]
3. 불만 접수 후 60일 이내에 본 국으로부터 최종 서면 결정을 받게 됩니다. [34 CFR 303.433, 17 CCR 52171(a)]
4. 서비스가 부당하게 거부된 것으로 확인되면, 본 국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지불한 서비스 비용에 대한 환급이나 향후 올바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Early Start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합니다. [17 CCR 52171(a)]
5. 적법 절차 심리의 일부가 아닌 경우, 60일 이내에 본 국이 불만을 해결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3.433, 17 CCR 52171(c)]
6. 귀하의 불만이 이전 심리와 동일한 사안 및 당사자와 관련된 경우, 본 국은 이전 적법 절차의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준수되어야 함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34 CFR 303.433, 17 CCR 52171(d)]
7. 공공 기관이나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적법 절차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불만을 해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4 CFR 303.433, 17 CCR 52171(e)]

불만 제기 시 포함해야 할 내용

불만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 국, 지역 센터, LEA 또는 Early Start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음을 설명하는 서명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4 CFR 303.434, 17 CCR 52172(a)]

불만 제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귀하의 연락처 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17 CCR 52170(g)]
2. 특정 아동에 관한 불만인 경우, 아동의 이름과 주소, 해당 지역 센터, LEA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문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귀하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포함하십시오. [34 CFR 303.434]
3.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발생한 상황,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차원에서 취한 조치 내용. [17 CCR 52170(g), 17 CCR 52170(g)(5)]
4. 불만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기관의 이름. 지역 센터, LEA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하십시오. [17 CCR 52170(g)]
5. 불만 제기서는 불만 대상인 기관이나 당사자에게도 발송해야 합니다. [34 CFR 303.434]
6. 불만 사항의 원인이 된 사건은 본 국이 불만을 접수하기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34 CFR 303.434, 17 CCR 52170(c)]

섹션 10: 맺음말

이 안내서가 부모로서 귀하의 권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00-515-BABY(800-515-2229) 또는 earlystart@dds.ca.gov를 통해 본 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양식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 불만 사항](#)

